

제308회 임시회
2012.04.25.(수)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04.25(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 2012년 04월 06일

다. 회부일자 : 2012년 04월 10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04월 17일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구명회)

가.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과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 권고사항과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여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수를 조정하고 외부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며, 심의회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심의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함(안 제5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를 추가함(안 제6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시기를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 의결 전까지로 함(안 제13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관련 지침에 맞게 정비함(안 제41조).
- 변상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함(안 제62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왕년)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의 권고사항 반영과 상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심의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였고,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에 외부 민간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무상임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대상에 무상사용과 무상

대부를 추가하였음.

- 공유재산 관례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시기를 예산편성의결 전까지로 하였고,
-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토지면적 시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에서 1,500제곱미터 이하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에서 3천제곱미터 이하로, 「농지법」에 의한 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대부받아 계속 직접 경작중인 자에게 20,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인접 토지의 소유자에게 시의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는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현행 조례를 수정하여 보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를 "교육기관(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시행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과 교육청에 각각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원 중 3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청에 두는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행정예산과장, 시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공유재산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2. 교육청에 두는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관리국장), 부위원장은 관리과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공유재산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인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본청은 재산업무담당사무관이, 교육청은 재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제13조제1항 중 "예산편성"을 "예산의결"로 하고, "편성하기"를 "의결하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을 "법 제27조제2항과 제3항, 영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각각 "법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한다.

제28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로 한다.

제30조제4항제7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14호"를 "영 제29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영 제34조”를 “제34조”로 한다.

제41조제3호 본문 중 “1천제곱미터”를 “1,500제곱미터”로, “2천제곱미터”를 “3,000제곱미터”로,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를 “시의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기타 읍·면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을 “1,5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로,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 시”를 “한정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매각 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의한 분할매각 시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대부받아 계속하여 직접 경작중인 자에게 20,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재산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8. 재산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재산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를 인접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 중 "이상"을 각각 "초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제1관서"란 본청의 <u>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u></p> <p>3. (생 략)</p> <p>4. "제2관서"란 교육청의 <u>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u> ----- ----- ----- ----- -----.</p> <p>3. (현행과 같음)</p> <p>4. ----- <u>교육기관(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u> ----- ----- ----- -----.</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과장급 이상 담당관 포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재산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p>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시행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과 교육청에 각각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원 중 3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현행	개정 (안)
<p><u>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45 358 1436 817">1. <u>본청에 두는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행정예산과장, 시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공유재산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u> <li data-bbox="845 896 1436 1489">2. <u>교육청에 두는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관리국장), 부위원장은 관리과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공유재산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인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li data-bbox="845 1568 1436 1904">3. <u>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본청은 재산업무담당사무관이, 교육청은 재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u>

현행	개정 (안)
<p>③ <u>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③ <u>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④ <u>교육청에서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심의회</u>의 위원은 <u>교육장과 각 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각 국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각 업무담당장학사(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u> 2. <u>심의회</u>의 위원장은 <u>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된다.</u> 3. <u>심의회</u>에는 <u>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과 재산업무담당주사(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재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u> 4. <u>그 밖에 심의회</u>의 운영에 관한 사 	<p>④ <u>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현행	개정 (안)
<p><u>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⑤ 심의회 심의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u></p> <p><u>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u> <u>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u> <u>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u> <u>4.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u> <u>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p><u>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u></p>

현행	개정 (안)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신설></p> <p>4. (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신설></p>	<p><u>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u></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u></p>
<p>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p>	<p>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 -----</p>

현행	개정 (안)
<p><u>산편성</u>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u>편성하기</u>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u>예산의결</u> ----- ----- ----- ----- ----- ---- <u>의결하기</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u>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u>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24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 ----- ----- <u>법 제27조제2항과 제3항, 영 제21조제1항</u>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법 제27조제2항</u>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④ <u>법 제27조제4항</u> ----- ----- ----- ----- -----.</p>

현행	개정 (안)
<p>⑤ <u>일반경쟁입찰</u>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u>법 제27조제2항</u>과 <u>영 제21조</u>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윤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u>외국인투자촉진법</u>」을 준용한다.</p> <p>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u>외국인투자촉진법</u>」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p>	<p>⑤ <u>일반입찰</u> ----- ----- <u>법 제27조제4항</u> ----- -----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 ----- ----- ----- ----- 「<u>외국인투자 촉진법</u>」-----</p> <p>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2조제1항제7호----- ----- ----- -----</p>

현행	개정 (안)
<p>다.</p> <p>1. · 2. (생략)</p> <p>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u>아파트형공장</u>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u>지식산업센터</u>로 ----- -----</p>
<p>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6. (생략)</p> <p>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u>영 제29조제1항제14호</u>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p> <p>8. (생략)</p> <p>⑤ · ⑥ (생략)</p>	<p>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 <u>영 제29조제1항제13호</u> ----- -----</p> <p>8. (현행과 같음)</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과 <u>영 제35조제2항</u>에 따라 외국</p>	<p>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p>

현행	개정 (안)
<p>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 ----- ----- ----- -----.</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p>1. ----- ----- -----.</p>
<p>가. 「<u>외국인투자촉진법</u>」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p>	<p>가.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9조----- ----- ----- ----- -----</p>
<p>나. ~ 사. (생략)</p>	<p>나. ~ 사. (현행과 같음)</p>
<p>2. · 3. (생략)</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p>	<p>③ 「<u>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46조제1항----- -----</p>

현행	개정 (안)
<p>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 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p>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제34조 ----- ----- ----- ----- -----.</p>
<p>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u>1천제곱미터</u>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u>2천제곱미터</u>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p>	<p>3. ----- ----- <u>1,500제곱미터</u> ----- ----- <u>3,000제곱미터</u> ----- ----- -----</p>

현 행	개 정 (안)
<p>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u>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u>)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u>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u></p>	<p>----- ----- <u>시의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기타 읍·면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u>----- -----</p>
<p><u><신 설></u></p>	<p>4. <u>제3호에 의한 분할매각 시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u></p>

현행	개정 (안)
<p>4.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u>범위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다.</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6. <u>「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대부받아 계속하여 직접 경작중인 자에게 20,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u></p> <p>7. <u>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재산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u></p> <p>8. <u>재산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재산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제한함으로써</u></p>

현행	개정 (안)
<p>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 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0만원 이상: 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2년 분납 4. 300만원 이상: 3년 분납 <p>② (생략)</p>	<p><u>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를 인접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u></p> <p>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 ----- -----.</p>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 초과 ----- 3. ----- 초과 ----- 4. ----- 초과 ----- <p>②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신설 2010.2.4>
-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 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

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개정 (2010. 4. 행정안전부)

제4절 처 분

1. 공유재산의 일반 매각

나. 매각 기준

1) 법률에 의한 매각

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대부하여 직접 경작중인 자에게 5년 이상 사용·대부받아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20,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매각하는 경우

3)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가) 다음 어느 하나의 토지(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포함)로서 재산의 위치와 규모·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입찰·지명입찰·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음

(2)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공유지만으로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2억원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

(3)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나)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500㎡, 시이외의 지역에서는 3,000㎡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 (1) 점유·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 (가)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하며,
 - (나) 위 (1)에 의한 분할매각시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 (다) 위 각 항에 따라 최대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서울특별시·광역시·광역시 동 지역은 300㎡, 시의 동 지역은 500㎡, 기타 읍·면 지역은 1,000㎡ 이내로 한정
- (2)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위 나)의 1,500㎡ 또는 3,000㎡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1)의 매각 범위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음

□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 영향평가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1824, 2011. 6. 1.)

1. 공유재산 관리과정의 특혜요인 제거

1-3 공공시설 청사 및 매점·자판기 운영자 선정 투명화

□ 개선방안

가. 공공시설 청사

- 공유재산 무상임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사용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 심의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
 -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의 경우 15명의 위원 중에 민간 전문가가 8명으로 과반수 이상
 -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장치 마련
 - 위원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
 - 법률자문, 용역수행 등에 관여한 경우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기획관리과-2606, 2011. 5. 18.)

3. 기본방침

-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위원장(부위원장) 권한 분산
- 자치법규 또는 자체계획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는 재구성 검토
 - 단, 위원회의 특성상 부교육감을 위원장(부위원장)으로 구성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 외부위원의 신분을 고려할 때 부교육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 ※ 위원회 결정 내용이 중요하고, 대외적인 권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법령 상 위원장(부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명시한 경우는 재구성 제외

5. 위원회 정비 계획

가. 조례개정

- 개정대상

연번	조례명	소관부서	비고
1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산업정보평생과	폐지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재무과	

- 개정방법
 - 소관부서별로 별도 계획 수립하여 별도 추진
 - 향후 관련 조례 개정 사유 발생 시 위원회 재구성(안)을 포함한 조례 개정 추진